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업지원 등에 있어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 활용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38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5.

(3) 회 부 일 : 2024. 11.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취업 지원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0조(취업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u>절차 및 내용</u>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u>절차,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활용 절차와 범위</u> ----- ----- -----.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제25조(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
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협조 요청) ① -----

제공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관한 협조를 고용노동부 등

. 요청받은

②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 사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일자리 수는 2004년 2.5만개에서 2024년 103만개, 예산은 2004년 212억원에서 2024년 2조 26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노인일자리 수와 예산 추이 >

- | |
|---|
|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명 → ('17) 47만명 → ('24) 103만명 → ('25안) 109.8만명 |
| ◆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원 → ('17) 5,231억원 → ('24) 2조 264억원 → ('25안) 2조 1,847억원 |

* 자료: 보건복지부

-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데 의미가 있겠음.

-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10조제3항 중 지원 요건으로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인데, 타부처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21조제1항의 후단 신설과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등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등 관련된 정보’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정비가 필요해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취업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중으로 현행 제도를 통해 노인 일자리 제공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와 사업수행 체계가 달라 고용노동부 등을 활용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으로, 고용노동부 등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을 통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취업 지원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법제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입법례가 없다는 입장임 - 고용노동부 등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을 통해 가능함
고용 노동부	◦ 노인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 외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 중이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 협조 대상 기관은 고용노동부를 특정하지 않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 필요 - 자료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부처 간 협조 사항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법제처	◦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음 - 현재 개정안 규정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사한 입법례도 확인하기 어려움 - 다른 행정기관의 인원 장비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인 경우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 규정 필요성에 동의하나, 신중한 검토 필요 -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지급관리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활용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것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9